

특 허 법 원

제 2 2 부

판 결

사 건 2018나240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추승우, 허범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환

담당변호사 김동훈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합55500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1.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72,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디자이너로서, '포스트디셈버'(Post December)라는 상호로 여성용 의류를 디자인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사랑텍스타일' 또는 '사랑레이스'라는 상호

로 의류용 원단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의 모양에 착안하여 별지 1과 같이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 연결된 '얼음과 매화문' 문양(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도안을 의류 등 제품에 적용하여 제작·판매하였으며, 2012년 가을/겨울 컬렉션(F/W collection)부터 2018년 가을/겨울 컬렉션까지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여성 의류 제품을 제작하여 카달로그 등 홍보물과 포스트디자이너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에 게시하여 왔다.

다. 한편 2013. 6. 23. 방영된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에 출연자가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상의를 입고 출연하였고,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원고를 소개하는 신문기사가 게재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블라우스나 스커트가 연예인과 아나운서의 방송용 협찬 의상으로 여러 차례 제공되었고, 여성잡지 등에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의류 화보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는 2013년 7월경부터 별지 2와 같은 문양의 원단인 'db0635'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4,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도안은 원고가 창작·공표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안을 레이스 원단에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9,172,009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한 14,172,0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안을 창작하기 전인 2013. 7. 8. 독자적으로 이 사건 제품의 문양을 창작하였고, 의류에 적용되는 문양이나 패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도안은 독창성이 없고, 기능적 요소로부터 분리할 수 없어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품은 염색 및 가공 과정에서 수축이 생기고,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원단 스와치를 무상 제공하는 등 손실(loss)이 발생하며, 물류비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재산상 손해액 산정 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원고가 2012년경 얼음 결정과 매화 문양에 착안하여 이 사건 도안을 창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안은 매화 문양이 얼음 결정을 이루듯이 서로 선 또는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레이스 제품이

나 도안들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 면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안은 레이스 원단이나 의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도안은 표현 방식이 원단이나 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기능적 요소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안은 창작성을 가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피고는 이 사건 도안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면 충분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물과 디자인은 배타적·택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는 도안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거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비 대상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비 대상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비 대상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비 대상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문양이 이 사건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2년 가을 및 2013년 봄경 발간한 컬렉션 화보 집에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3. 6. 23. '최고다 이순신' 드라마에서 출연자가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의류를 착용한 모습이 방영된 사실, 2013. 7. 1.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스커트 사진과 함께 창작자인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제품의 문양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7. 8. 전에 이 사건 도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디자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결론

피고는 응용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도안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이 사건 제품에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복제·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가) 저작권법 제126조의 적용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나) 재산상 손해액 산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도안이 적용된 레이스 또는 의류용 원단의 경우 주로 여름철 등 짧은 기간 동안만 판매되고, 의류 제품 특성상 유행 주기가 짧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될 경우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품의 1야드 당 판매가격이 16,000원이고, 이 사건 제품 1절 당 제조경비가 135,883원이며, 1절 당 15야드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2013년 7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제품의 원단 87절을 재직하였는데 그 중 재고가 10절이 남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이익은 대략 8,017,009원[= 총 판매수량 77절 × 1절 당 매출이익 104,117원(= 1야드 당 판매가격 16,000원 × 15야드 - 1절 당 제조경비 135,883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러나, 피고가 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단에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일부 원단은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스왑치' 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7절 전부가 피고가 판매한 수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데는 물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2)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나아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인지도, 피고의 저작권 침해방법과 침해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침해 경위 및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재산상 손해액 7,0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①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침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 7,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8.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7.까지는 같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김기수

 판사 이지영

별지 1

원고의 이 사건 도안



